

종업원에의 통지서

노동법 2810.5 조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2810.5(a)조는 고용주가 각 종업원을 고용하는 시점에 다음의 정보를 보통 고용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한다. 이 명령에 대한 예외는 다음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이 통지서는 www.dir.ca.gov/DLSE에서 다른 언어로 구할 수 있다.

종업원

종업원 이름: _____ 고용일: _____

고용주

고용주 이름: _____

(해당하는 모든 것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자영업자 회사 유한 책임 회사 합명 회사

다른 종류의 독립체: _____

채용 업체 (예를 들면, 임시직 취업 알선소 또는 전문 고용주 단체 (PEO))

고용주의 다른 상호명 (해당하는 경우): _____

본사 주소: _____

고용주 우편 주소: _____

고용주 전화 번호: _____

직장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고용하거나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직장내 다른 비즈니스 또는 독립체를 사용한다면 직장이 위치한 곳의 고용주를 위해 위의 정보를 기입하거나 다른 비즈니스를 위해 아래의 정보를 기입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입하십시오. 만약 다른 비즈니스 또는 공동 고용주가 없으면, 또는 다른 비즈니스만이 서비스 또는 급여 처리 서비스를 모집한다면 이 부분의 남은 부분을 건너뛰고 나머지 부분을 기입하십시오.

다른 비즈니스 이름: _____

이 다른 비즈니스는:

전문 고용주 단체 (PEO) 또는 종업원 임시제공 회사 또는 임시직 취업 알선소

기타: _____

본사 소재 주소: _____

우편 주소: _____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한 모든 오버타임에 특별 보수로서의 급료를 규정하는 단체협상 합의에 의해 보호된다.

노동법 2810.5 조의 전문을 www.leginfo.ca.gov/calaw.html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Labor Code)”에 체크표시하시고 인용 부호 안의 “2810.5”을 검색하십시오.

이 통지서상의 종업원의 서명은 단지 수령의 인정을 구성한다. 법에 의한 고용주의 일반 문서보존 필요조건에 따라서 고용주는 이 통지서에 제공된 고용 및 임금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종업원이 이 통지문을 수령했다고 인정하여 한 서명은 최저임금과 대비한 식비 또는 숙박비를 지불하기 위해 고용주와 종업원 간의 법에 의해 요구되는 자발적인 계약서로 구성되지 않는다. 모든 그러한 자발적 계약서는 별도의 문서로 입증되어야 한다.